

의안번호	2216982
의 퇴 인	강경숙 의원
회 답 일	2026.04.21.
추계번호	26C1304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 (교원 등의 연수)	(제2항)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2	안 제31조의2 (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)	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 (교원 등의 연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1조의2 (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한국학교의 장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의 한국학교 학생 학비 지원을 의무화함

- “한국학교”란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, '25년 기준 16개국에 34개교가 운영 중임¹⁾

* [참고자료] 재외한국학교 현황

1)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한국학교”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

- 개정안은 개별 한국학교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·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가 가구 소득 등 요건을 갖춘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

- 참고로,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사유를 추가하나, 이는 절차적 규정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음

□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학교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수업료 지원이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 법령에 근거한 관련 지원이 존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을 추계하기 어려움

- (안 제25조) 개정안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, 현행 법령에 따른 개별 한국학교 운영 경비 지원이 존재하고, 현시점에서 프로그램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
- 교육부는 현행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, '26년 한국학교 지원을 위해 621억 8,100만원이 편성됨²⁾
 - 해당 지원 내역에는 한국학교 운영비,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개별 한국학교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
 - 또한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(안 제31조의2) 개정안에 따라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

- 현행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26년 기준 한국학교 학생의 학비 지원 예산 17억 9,000만원이 편성됨³⁾
 -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, 사업 대상 및 단가 등 기존 사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
2)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(국고지원) 국가는 재외교육기관·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
2.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

3)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의2(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)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

- ☐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재외한국학교 현황

학교명	정부 인가일	학생 수(학급 수)					전임 교원 수						
		유	초	중	고	계	유	초	중	고	교장	교감	계
동경한국학교	'62.03.16		710(18)	348(9)	342(9)	1,400(36)		40	16	17	1	2	76
교토국제학교	'61.05.11			29(3)	136(9)	165(12)			5	9	1	2	17
오사카금강학교	'61.02.24		160(6)	68(3)	73(3)	301(12)		8	6	8	1	2	25
건국한국학교	'76.10.01	55(4)	140(6)	55(3)	152(9)	402(22)	10	10	11	20	1	5	57
일본 소계(4개교)		55(4)	1,010(30)	500(18)	703(30)	2,268(82)	10	58	38	54	4	11	175
북경한국국제학교	'98.08.26	27(2)	122(6)	144(6)	210(10)	503(24)	3	18	6	35	1		63
천진한국국제학교	'01.03.05	21(3)	119(7)	110(6)	117(6)	367(22)	4	18		32	1	1	56
상해한국학교	'99.07.06		249(12)	275(11)	341(14)	865(37)		30	5	51	1	2	89
무석한국학교	'08.03.01	38(3)	144(8)	137(6)	130(6)	449(23)	3	13		34	1	1	52
소주한국학교	'13.02.22	16(1)	115(6)	120(6)	130(6)	381(19)	1	11	10	12	1		35
홍콩한국국제학교	'88.03.01	12(2)	61(6)	32(3)	24(3)	129(14)	4	11		12	1		28
엔타이한국국제학교	'02.09.01		92(6)	82(3)	92(5)	266(14)		13	8	8	1		30
칭다오청운한국학교	'06.05.30	27(2)	231(10)	235(10)	228(10)	721(32)	3	20	20	21	1		65
웨이하이한국학교	'17.10.24		136(6)	79(3)	92(3)	307(12)		13		17	1		31
대련한국국제학교	'03.12.23	8(1)	57(6)	44(3)	78(4)	187(14)	1	11	10	10	1		33
선양한국국제학교	'06.07.26		46(6)	31(3)	30(3)	107(12)		10	7	8	1		26
연변한국국제학교	'98.02.19	3(1)	34(6)	22(3)	24(3)	83(13)	1	9	5	6	1		22
광저우한국학교	'14.02.07		127(6)	122(6)	144(6)	393(18)		13		27	1	1	42
중국 소계(13개교)		152(15)	1,533(91)	1,433(69)	1,640(79)	4,758(254)	20	190	71	273	13	5	572
타이베이한국학교	'61.10.01	13(1)	47(6)			60(7)	1	5			1		7
카오슝한국국제학교	'61.01.28	9(1)	27(6)			36(7)	2	4			1		7
대만 소계(2개교)		22(2)	74(12)			96(14)	3	9			2		14
하노이한국국제학교	'06.03.21		1,056(31)	642(18)	558(16)	2,256(65)		47	29	34	1	2	113
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	'98.08.04	41(2)	1,028(30)	500(15)	479(15)	2,048(62)	3	69	34	34	1	2	143
베트남 소계(2개교)		41(2)	2,084(61)	1,142(33)	1,037(31)	4,304(127)	3	116	63	68	2	4	256

학교명	정부 인가일	학생 수(학급 수)					전임 교원 수						
		유	초	중	고	계	유	초	중	고	교장	교감	계
리야드한국학교	‘79.04.24		15(2)			15(2)		2	1		1		4
젯다한국학교	‘76.09.18		11(4)			11(4)		2			1		3
사우디아라비아 소계(2개교)			26(6)			26(6)		4	1		2		7
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	‘77.04.25		177(9)	237(9)	334(13)	748(31)		24	22	25	1	2	74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	‘93.02.17	28(3)	140(6)	64(3)	93(3)	325(15)	6	19	6	17	1	1	50
방콕한국국제학교	‘02.02.18		93(6)	38(3)	47(3)	178(12)		10	5	6	1	1	23
필리핀한국국제학교	‘05.07.11	22(2)	74(6)	45(3)	43(3)	184(14)	4	14	6	7	1	1	33
과라카이한국학교	‘92.03.01	28(3)	43(6)			71(9)	2	6			1		9
아르헨티나한국학교	‘95.01.23	28(4)	58(6)			86(10)	11	15			2		28
모스크바한국학교	‘92.02.14	7(3)	35(6)			42(9)	1	6			1		8
테헤란한국학교	‘76.04.30		4(2)			4(2)		2			1		3
카이로한국학교	‘80.04.15		26(6)			26(6)		6			1		7
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	‘12.12.28	13(1)	55(6)			68(7)	1	6			1		8
프놈펜한국국제학교	‘18.08.27		57(6)	23(3)		80(9)		6	5		1		12
기타 소계(11개국, 11개교)		126(16)	762(65)	407(21)	517(22)	1,812(124)	25	114	44	55	12	5	255
합 계(16개국, 34개교)		396(39)	5,489(265)	3,482(141)	3,897(162)	13,264(607)	61	491	217	450	35	25	1,279

주: 2025.4.1. 기준 자료임

자료: 교육부